

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(제18조 관련)

1. 정기점검: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 - 가. 소방자동차: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
 - 나. 소방선박: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
 - 다. 소방항공기: 「항공안전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
 - 라. 그 밖의 소방장비
 - 1)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: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일(「소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6조에 따른 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교대시마다) 실시
 - 2)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외의 소방장비: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,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
2. 정밀점검: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의 특수장치 부분(이하 "특장부분"이라 한다)의 물리적, 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(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을 말한다)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 - 가. 소방펌프차 및 소방화학차
 - 1) 최초 정밀점검: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
 - 2) 정기 정밀점검: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
 - 나. 소방사다리차
 - 1) 최초 정밀점검: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
 - 2) 정기 정밀점검: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매년 1회 이상
3. 특별점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.
 - 가. 소방장비의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
 - 나. 해당 소방장비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, 전국적으로 유사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
 - 다. 그 밖에 소방청장이 특별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4.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이 결정되었거나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밀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5. 그 밖에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